

행정전산자료 불법유출과 법적대응

신 각 철(법제처 법제연구관)

행정전산자료 유출사건(94. 6.23)과 관련하여 전산망자료중
개인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법적보안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기업·개인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개인정보등 행정전산자료의 유출문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거나 집에서 홍보우편물을 받는 경우 기분은 썩 좋지 않다. 누구나 한번쯤은 회사나 가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월부채구입, 영어테잎 또는 어락교재 등 전화구매(속칭 phome sail)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편지·소포등을 배달하는 우체국직원을 반갑게 문밖까지 나와서 맞이하던 시대는 지났다. 필요없는 홍보우편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즉,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침해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미 언론등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개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직업등을 전산화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어 유통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번호를 적어두고 전산처리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이들 부녀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고 차량절도·공갈·협박 또는 음란성 폭력전화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도 언론등에서 보도되었다(중앙일보 92. 9. 23 보도).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중앙일보, 94. 6. 23 보도),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망 자료를 돈을 받고 유출시킨 공무원 및 기업관계자와 이 자료를 기업·개인등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정보대행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들이 유출시킨 개인정보는 종합토지세자료 110만건, 국민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 신용카드 가입자 자료 50만건등 무려 292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렇게 불법유출된 정보가 정보대행사에 의하여 건설회사·기업·백화점등에 팔려 상품홍보자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유출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자료의 경우 일반 직원 2명, 전산부직원 1명등이 공모하여 직접 자료를 빼어냈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고지서 인쇄작업 용역을 서울시로 부터 위탁받은 한국 ○○회사의 종업원에 의하여 유출되었다. 또한 ○○청의 전산자료는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세무정보를 빼냈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을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검찰에서는 이들 공무원이나 관련업체 직원들에게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법처리하였다.

국내 주요 언론에서는 사실을 통하여 법률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정보관리기관에 대한 통제·감독기능의 보안과 내부단속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제시한바 있다.

전산망자료에 대한 안전대책은 우선 제도적(조직적)·기술적으로 통제방법을 강화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안전조치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법규에 의한 범죄자」로서 강력한 처벌등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불법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전산망의 역기능방지〉

이 법률(이하 '전산망법'이라 약칭함)은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되었으며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시켜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화사회기반조성의 기본법으로서, 「국가기간전산망」-①행정전산망 ②교육연구전산망 ③금융전산망 ④국방전산망 ⑤공안전산망 등 기간전산망이 이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앞에서 밝힌 종합소득세 관계·국민연금 관계자료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산망」에 속하며 행정업무와 관련된 전산망을 국가행정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망 가운데는 주민등록·지적·자동차·부동산·공무원인사기록등 개인정보 관련자료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행정의 확대실시와 함께 조세·복지·위생등 주민관리 행정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전산처리 양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정보의 양이 늘어갈 수록 유출의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역기능의 방지대책도 비례하여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보화의 촉진에만 치중하였고 역기능 방지에 대해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호조치의 강화〉

전산망법 제22조에는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이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였다.

보호조치의 내용으로 시행령 28조의 규정을 보면 ①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설정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컨대, 정보에 대한 비밀번호부여, 출입통제, 책임자 지정, 입출력 통제 및 감시등 기술적·조직적 통제조치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②정보의 불법한 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해커 또는 바이러스 침투등을 통한 정보의 손괴, 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접근하여 정보의 변조·삭제 또는 부당이용등의 부정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③취급중 취득한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위의 사건에서 종합토시제자료, 국민연금 및 신용카드가입자 자료등은 개인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중요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불법누출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조직적인 통제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통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제정한「전산업무 보안관리지침」, 총무처의「행정전산망 안전관리지침」, 체신부의「전산망안전성, 신뢰성기준」등에 ①무단 출입통제 ②시설 관리상의 보안 ③비밀자료의 보안대책 ④관리책임자 지정등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장치로서 ①비밀코드부여 ②운영프로그램의 특수관리 ③바이러스 방지대책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1991. 5. 10. 제250호)「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에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에 관하여 ①단말기지정·보안 ②취급규제 ③일일보고 체제확립 ④정보유출 및 오용에 대한 제재등을 규정하였다.

〈타인의 비밀침해자 처벌〉

전산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비밀누

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30조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산망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크게 강화하였다.

위의 행정전산자료 불법유출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관리공단 직원, 인쇄용역을 맡은 인쇄소 직원, 광고대행회사 대표, ×× 화재해상대리점 대표등 10여명의 민간기업 대표 또는 직원이 전산망법 제25조·제30조의 규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동안 「전산망법」은 국가기간 전산망사업등 공공기관 전산망 사업에 대해서만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으나, 위의 법 제25에서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바와같이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 까지 「누구든지, 전산망에 접근하여 정보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산망법이 제정된 이후 약 8년정도 경과되었으나, 이번의 정보유출사건에서 최초로 벌칙규정이 적용되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약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1994. 1. 7 법 제4, 734호로 공포는 되었으나, 그 시행준비를 위하여 1년후인 1995.

1.7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종합 토지세자료등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행위는 이 법에 직접 저촉되지 아니한다(현재 시행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 이용등에 관한 중요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처리정보”라 함은 컴퓨터처리되어 개인정보파일(일종의 데이터뱅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화 되었을 때 “처리정보”라 하며 처리정보의 유통·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법 제10조)

①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이외로 이요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②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등에 이용,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등에 있어서는 제공이나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앞의 ①, ②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유출에 해당된다.

〈비밀유지등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권한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해서도 안된다(법 제11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금지규정〉

공공기관으로 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업체등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대해

서도 비밀유자의무, 타인에의 제공 금지등을 규정하였다(법 제11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바로 이 법률 제11조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종합토지세고지서 인쇄 위탁을 받은 민간기업의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이용에 대한 벌칙은 전산망법과 똑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불법제공받은 자 처벌〉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자의 처벌은 앞에서와 같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위탁업체의 직원이 불법행위시에 해당된다.

그러나 불법제공자 뿐만 아니라 제공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자까지도 이 법률에 의해서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광고대행회사·건설회사와 같이 영업활동에 필요하며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맺 음 말

앞으로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전산처리 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전산처리자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침해와 범죄에 악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술적·조직적·법적보안대책의 마련으로 통제와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